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68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3.

발 의 자 : 안도결 · 임호선 · 조인철  
이언주 · 전용기 · 박홍배  
박민규 · 김남근 · 김우영  
정진욱 · 복기왕 · 손명수  
의원(12인)

### 제안이유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액 사용료를 면제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납부 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개발 전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유재산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기간 현실화,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무상관리전환 사유 확대(안 제17조제2호다목)

종전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었으나, 일반회계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무상으로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 나.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안 제18조제1항제5호)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다. 국유재산정책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 제7항 신설)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유재산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총괄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한 국유재산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라. 국유재산 전대 허용사유 확대(안 제30조제2항제3호 신설)

사용허가의 목적·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인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허용함.

마. 소액 사용료 면제(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47조제1항)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및 행정비용을 절감함.

바. 지방공사에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위탁 허용(안 제42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도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개발 전 국유재산의 국민개방 확대(안 제47조의3 신설)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로 결정된 일반재산을 개발을 실행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일반 대중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요청자료 구체화 및 회신 의무화 (안 제6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원활한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료요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따르도록 함.

자.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안 제73조의4 신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에 대해 종전의 현금 뿐만 아니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 함.

차.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 46조제4항 단서 신설, 안 제57조제3항,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1) 종전에는 위탁개발에 대해서만 토지개발이 가능하였으나, 국유지를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도 토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2) 종전에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민간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간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청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도 총괄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민간참여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를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확대함.

4) 종전에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총괄청이 반드시 출자하여야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출자가 금지되었으나, 일반재산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출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함.

5) 민간참여 개발을 하려는 일반재산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대부기간을 30년 이내로 설정하고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계약 체결시부터 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발 대상 재산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다목 중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효율적인 일반재산의 활용 및 재정운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유재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으로 하며,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제5호 중 “관리·처분 수입금”을 “관리·처분 및 출자 수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특별회계·기금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9조의2의 개발에 따른 출자 수입금

제26조의5제1항제6호 중 “지출”을 “지출 및 출자”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사용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인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괄청과 협의 거쳐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한 경우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42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법인으”를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9조”를 “제57조”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을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해 대부하는”으로, “30년”을 “50년”으로, “20년”을 “50년”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를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개발 전 일반재산의 개방)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로 결정된 일반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부계약 없이 개방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지 않을 것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않을 것.
3. 개방된 재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방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하기로 결정된 시기, 일반재산의 개방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개발하는”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개발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총괄청”을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또는 소관 기금의 기금운

용계획, 특별회계의 예산(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0”을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 기금운용계획”을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총괄청”을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개발하려면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출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청”을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건설기간 및 규모”를 “제59조의2제1항의 개발 방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청”을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1. 개발의 목적 및 개발 대상 재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개발 대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9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및 제4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총괄청”을 각각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모집하고 선정”을 “모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총괄청”을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개발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관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조사내용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제59조의3제8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7항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친 사업협약(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협상대상자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제59조의3제8항 후단 중 “제59조의2제3항”을 “제5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참여 개발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6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총괄청”을 각각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59조의2제3항”을 “제5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의5 중 “제59조의3제7항”을 “제59조의3제6항”으로, “지정받은”을 “선정된”으로 한다.

제66조제5항 중 “등기소”를 “등기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를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사용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

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 중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을 “제59조의3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 다목, 제18조제1항제5호, 제26조제6항 및 제7항, 제30조제2항제3호, 제6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 · 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br>-----<br>-----<br>-----<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2. -----<br>-----<br>-----<br>-----                                      |
| 가. · 나. (생   략)                                                                                                         | 가. · 나. (현행과 같음)                                                         |
| 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다. <u>효율적인 일반재산의 활용 및 재정운용</u> -----<br>-----<br>-----<br>-----<br>----- |
|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 ① -----<br>-----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4. (생 략)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  
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생 략)

② (생 략)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신 설>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  
-----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유재산  
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논의하  
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  
한 국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구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  
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  
리·처분 수입금

<신 설>

6. (생 략)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5. (생 략)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  
한 비용의 지출

7.·8. (생 략)

② (생 략)

⑦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  
부차관 1명으로 하며, 정책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구성)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관리·처분 및 출자 수입  
금

5의2. 특별회계·기금 소관 일반  
재산에 대한 제59조의2의 개  
발에 따른 출자 수입금

6.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지출 및 출자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③ (생략)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제30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용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인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                                                                                                                                                                                                                |
|--------------------------------------------------------------------------------------------------------------------------------------------------------------------------------------------------------------------------------------------|----------------------------------------------------------------------------------------------------------------------------------------------------------------------------------------------------------------|
| <p>②・③ (생략)</p> <p>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br/>-----<br/>-----<br/>-----<br/>-----<br/>-----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br/>-----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p> |
| <p>② (생략)</p> <p>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p>                                                                                                                                             | <p>② (현행과 같음)</p> <p>③ -----<br/>----- -- 제57조-----<br/>-----.</p>                                                                                                                                             |
| <p>④ ~ ⑥ (생략)</p> <p>제46조(대부기간)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p>                                                                                                                                                                    |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46조(대부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제57조</p>                                                                                                                                     |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③ (생략)

<신설>

에 따라 개발하기 위해 대부하는 ----- 50년 -----  
----- 50년 -----  
-----.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  
-----  
-----  
-----  
-----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개발 전 일반재산의 개방)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로 결정된 일반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부계약 없이 개방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지 않을 것

제57조(개발) ①·② (생략)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생략)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않을 것.

3. 개방된 재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방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하기로 결정된 시기, 일반재산의 개방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개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개발하는  
경우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개발하는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

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산관리회사(자산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는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와 공동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개발하려면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또는 소관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특별회계의 예산(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계획등”이라 한다)---. -----

---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을 국유지개발목적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⑤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 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에 대부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출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등-----  
-----  
-----.

⑧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  
-----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 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 6. (생략)

② 총괄청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

-----.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  
-----  
-----  
-----  
-----.

1. 개발의 목적 및 개발 대상 재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2제1항의 개발 방식

-----  
-----

3.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개발 대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6. (현행과 같음)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  
-----  
-----.

<삭 제>

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  
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  
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총괄청은 제1항의 민간사업  
 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상  
 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  
 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  
 여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③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  
 -----  
 -----  
 -----.

④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 모집-----  
 -----.  
 -----  
 -----  
 -----  
 -----.

⑤ ----- 제4항-----

-----  
 -----  
 -----  
 -----  
 -----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 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총괄청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달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

-----  
-----  
-----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

⑥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개발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관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조사내용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⑧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7항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친 사업협약(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협상대상자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

약을 체결한다. ---- 제59조의2 제4항-----

⑨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참여 개발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6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제59조의2제4항-----

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 제59조  
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  
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  
④ (생략)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  
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  
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다.

<신설>

-----  
-----  
-----  
-----  
-----.

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 제59조  
의3제6항-----  
선정된 -----  
-----  
-----  
-----.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등기소,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  
·지방세·토지·건물 등의 자  
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를 제공하도록 요청---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                                              |                                                                                                                                                                                                                                                                                                                                                                                                                                                                |
|----------------------------------------------|----------------------------------------------------------------------------------------------------------------------------------------------------------------------------------------------------------------------------------------------------------------------------------------------------------------------------------------------------------------------------------------------------------------------------------------------------------------|
| <p>&lt;신 설&gt;</p> <p>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p> | <p>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p> <p>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사용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제1항의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 받을 수 있다.</p> <p>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p> |
|----------------------------------------------|----------------------------------------------------------------------------------------------------------------------------------------------------------------------------------------------------------------------------------------------------------------------------------------------------------------------------------------------------------------------------------------------------------------------------------------------------------------|

|                                                                                                                                             |                                                                                                        |
|---------------------------------------------------------------------------------------------------------------------------------------------|--------------------------------------------------------------------------------------------------------|
| <p>원 의 제) 위원회, <u>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u>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 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 <p>원 의 제) ----- <u>제59조의3제6항</u>-----<br/>-----<br/>-----<br/>-----<br/>-----<br/>-----<br/>-----.</p> |
|---------------------------------------------------------------------------------------------------------------------------------------------|--------------------------------------------------------------------------------------------------------|